



의안번호	제127호
------	-------

-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-
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22. 9. 14.

-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 -

민 간 위 탁 동 의 안

의 안 번 호	제127호
------------	-------

제출일 : 2022. 9. 14.

제출자 : 논산시장

제안설명자 : 아동복지돌봄과장

1. 제안이유

- 논산시 학교돌봄터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·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,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시설(사무)
 - ▶ 논산시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3. 01. 01. ~ 2025. 12. 31.(3년간)
- 소요인원 : 7명(센터장2명, 돌봄선생님3명, 돌봄보안관2명)

구분	논산동성초 학교돌봄터	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
계	3명	4명
센터장	1명	1명
돌봄선생님	1명	2명
돌봄보안관	1명	1명

- 소요비용 : 연 458백만원
- 위탁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 - 「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3. 논산시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

- 센터명 : 논산동성초 학교돌봄터, 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
- 이용대상 : 초등학교 1~6학년 (저학년, 맞벌이·취업 한부모가정 우선)
- 운영시간
 - ▶ 학기중 : 월요일 ~ 금요일 11:00~20:00
 - ▶ 방학중 : 월요일 ~ 금요일 08:00~20:00
 - ※ 운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, 주말·공휴일 제외
- 사업내용
 - ▶ 기본 프로그램 : 출결 관리, 급·간식 제공
 - ▶ 공통 프로그램 : 숙제 지도 및 학습 보충지도 등
 - ▶ 특별활동 프로그램 : 분야별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예체능 체험활동 등
- 운영현황 (단위 : 명)

센터명	주소	실수	개소일	정원	종사자			
					계	센터장	돌봄 선생님	돌봄 보안관
2개소		3실		59	7	2	3	2
논산동성초 학교돌봄터	관측로 263	1	'21.8.25.	19	3	1	1	1
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	논산대로 269-10	2	'21.8.25.	40	4	1	2	1

4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구분	직영(市)	위탁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명한 운영 •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• 업무중단 요인 해소로 인한 안정적인 운영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성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 •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•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용이 (후원금, 자원봉사자 등) • 업무 연속성 및 관리의 지속성 유지 가능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• 전문 인력 활용의 어려움 •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업무 연속성 및 관리의 지속성 유지 어려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성 및 수익성 관계 대립 • 부실업체 선정에 따른 위탁운영 품질 저하 우려

- 市 직영 운영 시 공공성 확보, 안정적인 운영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,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및 인사이동에 따른 잦은 담당자 변동으로 업무 연속성과 관리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움.

- 위탁 운영 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관리의 지속성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 참여 활성화 등의 장점을 사유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민간위탁 운영 방안

- 위탁기간 : 2023. 01. 01. ~ 2025. 12. 31.(3년간)
- 위탁사무 : 학교돌봄터 관리 및 운영
- 소요인원 : 7명(센터장 2명, 돌봄선생님 3명, 돌봄보안관 2명)

구분	논산동성초 학교돌봄터	논산중앙초 학교돌봄터
계	3명	4명
센터장	1명	1명
돌봄선생님	1명	2명
돌봄보안관	1명	1명

- 소요비용 : 연 458백만원
 - 인건비 : 221백만원 / 종사자 7명
 - 운영비 : 237백만원 / 일반운영비, 공공운영비, 시설유지비, 프로그램운영비
급·간식비 등

- 산출근거 (단위 : 원)

	구분	산출기초	산출금액(원)	비고
인건비	기본급(센터장, 돌봄선생님)	2,310,000원*5명*12월	138,600,000	2022년 확정내시 기준
	기본급(돌봄보안관)	63,000원*2명*312일	39,312,000	논산시 생활임금 적용(시급10,500원) 1일 6시간 근무
	직책수당(센터장)	200,000원*2명*12월	4,800,000	
	출장비(센터장)	200,000원*2명*12월	4,800,000	
	소 계		187,512,000	
간접비	퇴직급여충당금	인건비 / 12월	15,226,000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, 연말 후청구
	국민연금	인건비*4.5%	8,222,040	국민연금법 제88조
	건강보험	인건비*3.495%	6,385,784	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, 제73조, 시행령제44조
	노인장기요양보험	건강보험*6.135%	391,768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4조
	고용보험	인건비*1.15%	2,101,188	고용보험법제6조,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조,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 한 법률 제14조, 시행령12조
	산재보험	인건비*0.9%	1,644,408	
	소 계		33,971,188	

	구 분	산 출 기 초	산출금액(원)	비 고
운 영 비	일반수용비	24,500,000원*2개소	49,000,000	교구 및 도서 구입 등
	프로그램 등	60,000원*3실* 260일	46,800,000	강사수당 시간 당 3만원
	공공요금 등	8,000,000원*2개소	16,000,000	
	급식비	6,000원*60명*260일	93,600,000	단가 6,000원
	간식비	2,000원*60명*260일	31,200,000	단가 2,000원
	소 계			236,600,000
총 계			458,083,188	

○ 위탁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- 「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
6. 실무부서 종합의견

- 직영으로 운용할 경우 일반행정과 연계 및 종합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준인건비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확보가 곤란하고 정례적 인사이동으로 운영기술축적이 곤란한 단점이 있음.
 - 반면에 민간위탁으로 운용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, 시의 책임 및 통제의 약화라는 단점이 있으나 비용절감, 서비스의 양적·질적 개선,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,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활용 등 장점이 많아 타 시·군에서도 위탁 운영을 선호함.
- ※ 전국 학교돌봄터 26개소 중
- ▶ 지자체 직영: 6개(2개소 위탁예정) ▶ 민간위탁: 11개소 ▶ 공단운영: 9개소
- 위와 같이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·단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22. 9. 14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아동복지돌봄과장	김 화 수
	아이꽃돌봄팀장	김 윤 희
	담 당 자	차 원 주 (746-5882)

학교돌봄터 타 시·군 운용 현황

시·도	시·군·구	초 등 학 교 명	운 영 주 체	비 고
서울 (8)	중 구	흥 인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청 구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봉 래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덕 수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광 희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장 충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남 산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		충 무 초	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	
대전 (1)	유 성 구	원 신 흥 초	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	
부산 (2)	부 산 진 구	초 읍 초	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	
	기 장 군	해 빛 초	기장군 도시관리공단	
경기 (11)	고 양 시	향 동 숲 내 초	사단법인 참다솜교육	
	수 원 시	수 원 초	사회복지법인 수원제일복지재단	
	하 남 시	신 우 초	인성소통협회 사회적협동조합	
	성 남 시	판 교 대 장 초	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	
	부 천 시	상 인 초	부천교육 사회적협동조합	
	시 흥 시	승 지 초	사단법인 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회	
		군서미래국제학교	사단법인 더불어함께	
		배 곧 누 리 초	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	
	오 산 시	오 산 고 현 초	유림 사회적협동조합	
		원 당 초	市 직 영	위탁예정
		세 미 초	市 직 영	위탁예정
충 남 (4)	논 산 시	논 산 중 앙 초	市 직 영	
	논 산 시	논 산 동 성 초	市 직 영	
	홍 성 군	홍 주 초	郡 직 영	
	홍 성 군	홍 성 초	郡 직 영	

관련 법령 발췌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충청남도 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치사무는 논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○ 「**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**」 제9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.

○ 「**사회복지사업법**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-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2.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